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19- 621호

2019년 『희망두배 청년통장』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

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「희망두배 청년통장」 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19년 6월 3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1. 『희망두배 청년통장』 개요

○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, 15만원 중 선택하여 2~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.

○ 주거·결혼·교육·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.

〈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〉

월 적립금액		적립기간별 총 적립금		비 고
본인저축액	근로장려금 지원	2년	3년	
10만원	10만원	480만원+이자	720만원+이자	매월 적립시
15만원	15만원	720만원+이자	1,080만원+이자	

2. 신청자격

▸ 다음 ①~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① 공고일('19.6.3.) 현재 근로 중인 **서울시 서대문구** 거주자

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('19년)에 **만18세~만34세인 출생 년생(1984.1.1.~2001.12.31.출생)**

③ 공고일('19.6.3.)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**월220만원 이하**인 자

④ 공고일('19.6.3.) 기준 부양의무자(부모·배우자)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인 자

※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, 청년의 부모·배우자·자녀는 필수 포함하고, 형제·자매·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

※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·배우자만 산정

※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지 여부는 서류 접수 후 자치구에서 소득재산 조사하여 산정함(2달정도 소요)

〈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〉 (단위: 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중위소득 80%	1,365,606	2,325,222	3,008,026	3,690,829	4,373,632	5,056,435	5,739,238

▸ **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**

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
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(학자금, 전세자금 대출 제외)

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
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통일부 미래행복통장,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'19년 신규참여자

(예)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,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

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·희망플러스·꿈나래·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'19년 신규참여 가구(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)

(예)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·Ⅱ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 등

단, 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

※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: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, 자매

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

3. 신청방법

○ 모집인원 : 서대문구 111명(가구당 1명 신청)

○ 신청기간 : 2019. 6. 3.(월) ~ 6. 21.(금)
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우편, 이메일(동주민센터 담당자) 접수

▸방문은 근무일 중 09:00~18:00,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:00까지, 이메일은 24: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(누락, 식별불가)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

※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**JPG, JPEG 파일**로 제출

○ 제출서류 : 서울시(www.seoul.go.kr), 서울시복지재단(www.welfare.seoul.kr),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

【 필수 제출서류 】 - 신청자

①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(별도서식, 본인·부모·자녀가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체크) 1부
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
③ 가구원 소득신고서(별도서식) 1부
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별도서식) 1부
⑤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 신청서 1부
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(별도서식) 1부
⑦ 신청자 주민등록초본(최근5년 주소포함, 주민등록번호 포함) 1부
⑧ 신청자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, 동거인 제외) 1부
⑨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기준) 1부

【 추가 제출서류 】

①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) 1부
※ 결혼한 청년이 배우자·자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
②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(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)
- 건강·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·임금확인서(별도서식) 또는 일용근로확인서(별도서식)
※ 임금이체통장 사본첨부(일용근로확인서인 경우 반드시 제출)
-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, 국세청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
*2019년 이전 사업 시작한 자: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(7/2 이후 발급가능, 7/26까지 보완제출)
*2019년 사업 시작한 자: 소득금액계산서(붙임) 및 증빙서류(카드, 현금영수증 매출 총계표 등)
- 사업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
*2019년 이전 사업 시작한 자: 2018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*2019년 사업 시작한 자: 일용근로사실 확인서로 대체+임금이체 통장사본
③ 재직증명서 or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(현 직장 재직기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)
④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·기피 사유서(별도서식) 1부
※ 특별한 사유로 부·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
⑤ 임대차계약서(본인의 현거주지 및 부모님·배우자의 거주지 모두제출)
⑥ 사용대차확인서(별도서식) 1부 ※ 부모·형제·자매·친인척 등의 집에 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
⑦ 위임장(별도서식) 1부.
※ 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제출(대리인 신분증 지참)
⑧ 가구특성 증빙자료 1부
※ 장애인 또는 장애인부양, 다문화, 국가보훈, 북한이탈주민인 경우

4. 최종대상자 선정

○ 선발기준 :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
- 심사항목 6종(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,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, 서울시 거주기간, 지원시급성, 가구특성,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)

○ **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: 2019. 9. 20.(금)예정**

-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

※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

5. 기타 유의사항

○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이메일·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6. 문의처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서울시 다산콜센터 ☎120(국번없이)
- 주소지 자치구(330-1863) 및 동주민센터(붙임)
-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
  http://www.welfare.seoul.kr/youth/index.action